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5.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현 의원·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4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상정된 안건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5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5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 5
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 5
5.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5
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 5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5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5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5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5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5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5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5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5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5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5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 의원·송기현 의원·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5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6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6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6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6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6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6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6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6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6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6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6

(10시15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지난 두 번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안의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5.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6.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현 의원·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10시16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총 35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쟁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어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소위원회 논의 쟁점사항을 깔아 드렸는데요. 일단 모두 17건이고 10번부터 17번까지, 12·13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권, 임용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중대범죄의 범위에 대한 논의입니다. 소위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소위 논의 사항을 보시면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 모든 범죄가 사이버범죄화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지도 우려스러우므로 사이버범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정춘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모든 범죄가 사이버와 연관되어 국가수사본부의 모든 범죄와 동일하게 겹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할 고도화된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식 위원님의 의견, 사이버범죄는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발전하므로 인력을 분산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고동진 위원님의 의견, 사이버범죄에 대해 고려 중인 규정·유형안의 정리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 고민하는 내용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소위에서 보고해 달라는 윤건영 소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중대범죄등’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정부안 제2조제2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은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고동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2조 2호의 ‘중대범죄등’에서 ‘등’을 빼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대범죄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안에서는 중대범죄등을 가·나·다목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목과 나목은 다른 수사기관의 직원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 그리고 다목에서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다목에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호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이 조항은 지금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2020년에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나왔던 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판례에서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해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 부분이 이게 관련 범죄라기보다는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 중에 인지한 범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의 범위와 그다음에 다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논의에 앞서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이틀 동안에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 주실 자료를 깔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정청 협의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데요.

이게 정부안이다 보니까 지난 두 차례의 법안소위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대 범죄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 안을 놓고 심사해 주실 걸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법원에서도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해 왔다라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요 기존에 6대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란·외환죄 그다음에 사이버범죄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었다라면 그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시행령에 담을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문에 담아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아마 3쪽부터 있는 수정의견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협의가 새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정의견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4쪽의 2번 보시면 ‘중대범죄등’에서 이 중대범죄등을 명확하게 하거나 다른 표현을 했으면 한다는 지난 소위 의견이 있으셨습시다만 저희가 다시 잘 살펴보니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것은 ‘중대범죄’ 하고 띄고 ‘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의 중수청 법안은 여기 보시다시피 ‘중대범죄등’을 붙였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명사화된 하나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것의 해석이 가·나·다고요. 다를 보시면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빠져서 더 명확하게, 즉 이것 관련한 것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안에 정부는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위원님들 다수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당정청 합의안에서 보면 그것을 각 형법이나 각 법률의 구체적인 죄명으로 다 적시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안이, 당정청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정부 의견 상당히 잘 수정된 것 같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사이버범죄는 어차피 경찰청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하고 경찰청을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수정안으로 하면, 4쪽에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거기 마항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71조제1항제11호 이것 관련된 사이버범죄를 수사한다라고 아예 여기 넣어 놔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범죄 등 국가 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그때 우려해 주셨던 해킹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연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법률 조항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 내용은 사실은 경찰청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동의한 사항입니다.

○**고동진 위원** 인지를 하면 자기네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사이버범죄는 워낙 빨리빨리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한곳에 모아 놓고 하고 이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나온 것처럼 더 큰 것, 코인 관련된 것, 특정 정보통신 그다음에 국가내란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게 진전되는 게 보이면 그다음에 중수청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에다가 담아 놓을 수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버범죄 인력은 한곳으로 일단 모아 놓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양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 시에 중수청으로 파견을 보낸다든가 운용의 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출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강조하신, 앞으로 사이버범죄가 더 만연화되고 인공지능에 따라서도 될 테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한군데로 다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은 추후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동진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법에다가는 이것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법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부처에서 잘 받아서 시행령이나 운영 과정상에서 반영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꼭 유념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춘생 위원**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있고 그동안 수사를 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면 95년도부터 사이버범죄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수사 역량과 자료 데이터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일종의 사이버범죄 중에서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범죄 수사 범위가 확장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이게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이, 다른 수사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단이 굉장히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게 대검에 사이버범죄수사과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동부지점에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 기구를 이쪽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더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해 주세요, 아직도 의혹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것은 사이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수청에서 이 모든 사이버범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소위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확대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특히 국가기반시설이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국민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한 거고 지금 그래서 아예 법률에다가 관련된 사이버범죄를 직접 명시해 놓은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무제한적으로 중수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것이 확대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또 전부 다 갖고 와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고 국민 불평과 직접 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등치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광 개인정보 유출이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법률에서 열거된 것과 관련된다면 되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큰 역할이고요.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게 어떻게든 해킹이 됐거나 유출됐다 그러면 어떤 수사, 경찰서나 이런 데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된다는 것을……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 차관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점점 확대돼요. 모든 게 이게 포섭이 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도 사이버범죄 자체가 대단히 많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그중에서 서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악성 앱

이나 피싱사이트,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이나 이런 것을 통합하는 조직이 경찰청 내에 따로 있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있습니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라고 따로 있고……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이버수사단이라고 또 따로 있고.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금융 쪽도 들어와야 되고 네이버나 각종 통신사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이광희 위원 이런 것을 제외한 대형 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만 이걸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이버범죄를 이렇게 조항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사이버범죄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개별 사기업에 대한 단순 해킹으로 갔다가 수사를 해서 올라가다 보니 그 조직이 똑같이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항상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령이나 이랬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지 않으면 수사 중에 혼돈이 많이 올 것 같고 또 우선수사권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통보한 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차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어느 정도는 있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고 처음에는 되게 작은 꼬투리에서 국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우려는 됩니다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전문성이 떨어질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기껏 구축해 놓은 경찰청의 전문성이 이렇게 되면서 혹시 분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건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2번 안건은 지방청 지청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 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시면 조문의 3조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2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그리고 3항에서는 지청을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수사청과 지청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지방수사청 그리고 그 밑에 지청이 설치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이게 검찰 조직과 비교해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검, 고검, 지검, 지청으로 4단계로, 중앙까지 포함하면 4단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 지방중수청, 지청으로 3단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수정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저께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지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앙에 중수청을 두고 또 지방에 권역별로 설계를 해서 지방중수청을 두는데요. 지청까지 두는 부분은 이게 단계가 잘 운영되고 이래서 필요할 때 두는 걸로 해서 지청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수용해서 두지 않는 방안으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청 근거를 굳이 담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법안소위 두 차례 과정에서 3단계로 갈 필요가 지금 당장 굳이 있겠냐,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의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지청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판단하면 될 일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을 수용을 하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정춘생 위원 질문 있어요, 질문.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현행 법안으로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통합특별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때 여기 넣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춘생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어디다 몇 개를 들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서 핵심은 2단계냐 3단계냐인 거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 3단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춘생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안건.

○전문위원 나아정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직무 부분에서, 바로 39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직무에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그리고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직무 범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하고 넘어가셔야……

○**이상식 위원**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39페이지입니다. 소위자료 39페이지 하단에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검찰청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은 자구 수정 정도인데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로 바꾸자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것은 굳이 뭐 여기……

40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정부안에 2번 ‘법령’을 ‘법률에 따라’로 바꾸자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위임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동의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자료 40페이지 정부안을 보시면요 ‘2.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게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령’ 자를 ‘률’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한 글자.

다음 안건 말씀……

○**전문위원 나아정** 직무 범위를 조금 더 좁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쪽에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지만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중수청은 새롭게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적법성 담보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경우고요. 그럼에도 명백한 불법이 있다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41페이지 5조 여기서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거로만 딱 하면 아주 명확한데, 그리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것도 아예 빼 버리고.

‘일반적으로’ 그 첫 글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만 구체적 사건’ 이것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명확합니까, 차관?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41쪽 보시면 정춘생 의원님 안이나 황운하 의원님 안에도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사청의 수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행 검찰청법에도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큰……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한 것 그다음에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한 다 이것보다는 행안부가 이 조직을 가져가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도 저희가 한때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휘나 감독할 때 보면 개념적으로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지휘로 보통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 지휘보다는 그것은 제외한 일반적 지휘라는 표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것 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일반적 지휘에는……

○고동진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크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구체적 사건은 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도록 한 거지요.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장관은. 그때 우리 전체회의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식 위원 그것은 자기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방침이겠지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를 좁힌 게 아니라 열어 놓은 거니까.

○이상식 위원 좁힌 거지요. 좁힌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만요.

행안부에서 배석하신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 이지성** 정책기획관 이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통 지휘라고 할 때 일반적 지휘하고 구체적 지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 앞에서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저희 정부안의 취지는 여기서 일반적은 중수청에 있는 직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수사 지침이라든지 수사 제도, 어떠한 절차 이런 것들을 의미하려고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밑에서 구체적 지휘라는 것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에 소속 직원까지는 지휘·감독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고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은 지휘하지 말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라는 그런 취지로 정부안은 담겼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기존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시대가 자꾸 바뀌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중요 정책과 사무행정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면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 정책과 사무행정에 대하여’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딱 명확하잖아요.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게 뭐지 이것보다는 ‘중요 정책과 사무행정에 대하여’라고 딱 그렇게 자구를 박아 버리면……

○**이상식 위원** 이것은 법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법꾸라지 나오고 그러는 거지……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 정책기획관의 설명도 그러하고 기존의 법문에서도 일반적으로라고 규정하는 양식이 해당 조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수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수청 수사관이나 절대로 지휘·감독하지 말고 청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거라서 이 조항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부분인데 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제까지의 법문 그리고 법 해석 그리고 부처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크게 취지에 반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

○**박수민 위원** 제가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박수민 위원** ‘일반적으로 지휘한다’ 이것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의 장관이 외청장을 지휘할 때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필요 없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 이것을 넣기 위한 조항 같은데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이것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저는 사실은 법의 품격을 위해서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법률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고 모호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니까, 법은 좀 건조하고 명확해야 되니까 빼는 게 좋겠고.

‘구체적 사건에서 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 이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법무부장관과

검찰 시절에 있었던 이 조항이 어떤 공과가 있었고 그러면 중수청에서는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을 토론해야 되는데 저는……

차제에 물어 내지요. 전에 발언했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을 통해서 지휘해 가지고 좋았던 기억보다 사건 사고 엄청 많았고…… 제도라는 건 중립적이지요. 좋게 쓰면 좋고 나쁘게 쓰면 나쁜데 저는 나뉘었던 기억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조국 사건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결국 이 조항에서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저희가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물어 내도 좋겠다, 물어 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박수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하면서 그동안 정치화되고 구체적인 수사지휘하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개혁을 한다면 여당도…… 지금 이 부분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주원인인데 그것을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 이 커플로 다시 가지고 와서 예전의 내무부와 경찰청 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들이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들어내고 수사권을 정말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정치로부터 무풍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들께 신뢰받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재관 위원님 마지막 말씀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를 만약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청이 아닌 중간 간부라든지 기타 수사 인력들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오히려 이 조항을 근거로 더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만약에 이 조항을 좀 빼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최고 감독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청장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용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이 다소 고답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안의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안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지난 두 차례 법안소위 그리고 오늘까지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민 위원 이거는 재재 쟁점으로 좀 돌리시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렇게 지금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야 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수민 위원 아니, 이것 안 하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이 조항들은 빼야지.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고 또 민주당 위원님, 조국혁신당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달희 위원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표결이라든지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확인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표결이라는 방식 쓰지

말고.

○박수민 위원 제가 간곡히 호소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적격성 심사도 있어요, 수사관에 대해서. 그리고 근평 거쳐 가지고 다 압박돼 있고 징계위원회도 있고 행안부장관 권한이 큼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왜 관여하는 조항을 안 끊어 내려는지, 개혁하자는 차제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두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더 이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이것 표결입니까 됩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굳이 표결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희는 반대인데……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러니까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겼고 그런데 이걸 또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확인이 됐으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박수민 위원 아니, 소위는 원래 저희가 토론해서 합의가 기본인데 매번 이렇게…… 그동안은 정국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도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고 안정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토론해서 숙고해서 국민들한테 저희 합의된 결론을 드러야지, 소위에서도 맨날 표결할 거면 뭐……

○소위원장 윤건영 계속 반복되는데요.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숙고합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돌리든지……

○이달희 위원 왜 찬성하시는지 진짜 들어 보고 싶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한데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간명하게 가자라고 하는 걸 원하시면 표결을 진행하고요.

왜냐하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법안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민생과 관련된 법이어서 여야 간에 참여하게 입장이 나뉜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처럼 내일도 해서 좀 더 해 보자라고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10월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급한 법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갈 일은 아닙니다만 이틀 동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도 3일째에서 들어 보니 의견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반대 의견을 굳이 남기셔야 된다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법안소위에서 표결 자체가 그렇게 썩,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철회해 주십시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여당과 야당이……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여당 위원님들하고 조국혁신당 위원님까지도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이 정부안이 나왔는데 반대하시겠습니까마는 이 문제는 정말……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정부안에 대해서 어제 저도 반대한 것도 있고……

○**이달희 위원**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 표현을 말씀하시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좀 놔두시면 어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표결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것 맨날 표결하고……

○**이해식 위원** 일단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폐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뭘 이렇게 미리 없애 가지고 시한에 쫓기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표결하자고 그러시면……

○**이해식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고동진 위원** 표결 방식은 하지 맙시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만하시지요. 맨날 표결하는……

○**이달희 위원** 누가 표결하자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야당, 여당 나누어서……

○**이상식 위원**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청하고, 행안부장관하고 중수청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그런 면이 있는 거지요. 중수청은 전문 수사기관이고……

○**박수민 위원** 이게 좋았던 경험, 기억이 없는 조항인데……

○**이달희 위원** 행안부장관 밑의 중수청 갔다 넘어온 적 없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시 한번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표결로 가면 남아 있는 건건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별로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기회 충분히 드리고,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고, 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박수민 위원** 저는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조금 유보시키면, 몇 개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쟁점 다 털 것 같고 한 2~3개 정도, 국민들께 저희가 그렇게 숙고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소위에서 해서 표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상식 위원** 검찰개혁 법안 한 30년 동안 우리 토의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참에 더 잘하자는 거잖아요. 더 잘해서 끌어내자는 건데……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청장이 부딪혔던 조항이 이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이건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제가 판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표결을 할지 아니면 확인하고 넘어갈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이해식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박수민 위원** 마음이 불편합니다. 맨날 표결할 거면 하나 마나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 뭐……

○**이상식 위원** 그래도 토의는 중요하니까. 토의는 중요하니까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

지요. 표결해야지.

○박수민 위원 아니,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걸 놓고 고민한다는 자체 그리고 여론도 좀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희끼리 딱딱 하고 역사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상식 위원 더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박수민 위원 이걸 뒤로 좀 빼놓고 다음 것 나가시지요.

○이상식 위원 지금 뒤로 뺄 여유가 없습니다.

○고동진 위원 우리가 10월 2일이니까……

○박수민 위원 10월 많이 남았고 지금 3월인데 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3월 아닙니까?

○이상식 위원 지금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데 6개월도 모자랍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왜 먼저 없애서 갖고 그렇게 목을 스스로 조릅니까?

○이상식 위원 마지노선으로, 배수진을 쳐야지.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 저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 조항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알려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쟁점사항 정리하신 것 보면 17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17번까지라서 4건을 표결하기보다는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표결 사항은 차라리 뒤로 빼 놓으시지요.

○고동진 위원 일단 유보해 놓고……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래서 의견을 확인했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는데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의견을 좀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안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4번, 중대범죄수사청장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결격사유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 가입 조항의 연원과 취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43쪽 박스를 보시면 정부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중수청장 결격사유,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일단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청문회를 하

지 않고요.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공수청장 등에도 이런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검토 의견, 정부 원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은 원안 검토의견을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이게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정당 가입 사실이 없다라든가 그걸 집어넣었을 때 지금 청문회에서 걸러질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보장해야 된다 그걸로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이달희 위원 어떻게 검토가 돼요?

○고동진 위원 지금 여당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청문회 해도 상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렇게 결격사유가 돼 있는데 중수청장은 똑같은 행안부 소속인데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게 로직이 안 맞잖아요, 뭔가 논리가. 그리고 청문회에서 걸러진 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보시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다른 부분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부분은 없더라고요.

○고동진 위원 검찰총장하고 대법원장하고 중수청장하고 비교를 합니까? 거기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정당이라든가 이런 쪽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 차관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 무가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청장이니까, 그것도 처음 출발하는 중수청장이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보장을 하고 알려 주고 그렇게 해서 산뜻하게 출발하는 게 맞지, ‘청문회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것 표결해서 넘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행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해식 위원 표결해서 넘어간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표결해서 넘어가는 건 우리가 얘기한 거고.

○고동진 위원 그게 그 얘기지 됩니까? 아니, 지금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고 해도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것 비상식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이해식 위원 고정하시고……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국수본부장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찰청장하고 비교

를 하셔야지.

○소위원장 윤건영 4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또……

이 부분도 여당 위원들은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고동진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도 고 위원님 안 지지합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아니, 여당 위원님들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넣는데 중수청장을, 정치적인 중립을 국민들께, 애드벌룬 딱 띄워 놓고 시작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개혁의 아이콘인데……

○고동진 위원 아니,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차관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이달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 이게 너무 시간이 갈까 봐……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제가……

○박수민 위원 다음 것 가시지요.

○이상식 위원 반대할 건 없지. 처음에 한 건데……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5번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후보추천위원회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특정 단체를 명시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공수처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에 국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또 공수처는 과거에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기구로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중수청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행안부차관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임명절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라든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동일한 인원이라든지 외부위원 구성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쟁점 5번이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박수민 위원**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데,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행안부 소속 외청인데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건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 지금 정부부처의 장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수민 위원** 공수처.

○**이해식 위원**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이상식 위원** 공수처는 의미 자체가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을 국회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이상식 위원님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은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외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고동진 위원** 저도 국회에다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부분을 고려한다면 국회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6번은 아까 2번과 함께 정리된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7번, 정원 상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정원을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원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정부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사례를 들어 주시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정확하게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국회에 직접 두는 준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서 특별한 구조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업무 특성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과도한 표적수사 방지라든지 조직의 비대화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검사 몇 명, 직원 몇 명 해서 딱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서 수행인력의 상한을 법정화해 놓은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인력 비율은 엄격하게 관리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사 건수가 너무 늘어난다거나 그럴 때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업무량을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안건.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8번,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경합, 이첩 요청권, 정당한 사유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통해 수사권 및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이첩 요청권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의 종류와 각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를 도식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사건 통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배포하는 자료는 행안부에서 만든 수사대상 범죄 비교 및 관계 도식화라는 표 한 장입니다.

부처 의견을 주시는데 간명하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이첩, 통보, 경합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고요.

먼저 표를 봐 주시면 분야하고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범죄랑 그 위의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인 경우, 그래서 중대범죄면서 일반국민, 고위공직자 외 공무원이면 2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중대범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4번인 경우에 1·2·3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청 산하 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1번 영역에 있어서는 현재 중대범죄랑 고위공직자범죄일 경우, 1번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범죄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범죄지만 이렇게 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색깔 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드렸습시다만 이 2번 색깔에 있는 중수청은 이 도표에서 볼 때 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전체 수사 건수에 있어서는 1%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범죄와 중대범죄가 좀 다르다, 아주 굉장히 복잡, 고난도의 법리분석이 필요하고 고도의 법률지식이라든지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것 정리 아주 잘된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에 문의했을 때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수청에다가 이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하위법령으로도 정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정당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건의 종류라든지 피의자의 신분이라든지 이첩 요구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무 의견 같은 걸 다시 한번 수렴해 보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법률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줄 때는 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사준칙에 담아서 계속 유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시행령으로 넣어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법률에 넣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시행령 또는 수사준칙에 담자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는 담을 수 있나 그게 의견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사례가 유형화되면 그렇게 담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수사경합조정위원회, 수사기관조정협의회 같은 게 형소법 논의할 때 분명히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런 쪽에서도 또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동진 위원** 시행령으로 뭔가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여튼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출발할 때, 정당한 사유가 나중에 보완은 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가지고 출발하자 이것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부분이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윤건영** 왜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통보 문제에 있어서 일선 수사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제가……

○**이상식 위원** 그건 나중에.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첩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른 수사기관과의 이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 수정할 부분들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안건입니다. 검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기 전에 당정청이 협의해서 두 차례 법안심사 과정에서 45조 부분이 여야 공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

고 또 찬반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45조 전체를 삭제하는 안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정부안 제45조(검사와의 관계) 전체에 대해서 삭제안을 제출하고 정부 측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이게 저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중수청과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제45조(검사와의 관계)였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정청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저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사와의 관계 조항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당정청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통째로 들어낸 그런 협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안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아정** 10번,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 중수청장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고요.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부 측에서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행안부장관 관련 조항이라고 이렇게 법령 위임사항,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한 자료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중수청장에 대한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 관련인데요. 정부안은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와 병행해서 고민한 게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듯이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중수청장이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징계권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되고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랑, 위임을 해 주는 거랑 아예 권한이 없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다가 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마련해 주시면 큰 문제, 권한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10번,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과 관련해서는 방금 행안부에서, 위임사항의 중간에 보면 17조(수사관의 임용) 해서 명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및 지방 중수청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문서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10번 안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11번 안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4번에서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겹치는 내용이라서 생략하고요.

12번, 수사관의 겸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박스를 보시면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중수청장의 당적 이탈하고 수사관 임용자격의 당적 이력은 다릅니다. 수사관은 직접 수사하는 사람인데 3년 이내에 정당을 가지면……

제가 앞서서 상상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민주과출소장이 경력 채용을 해서 바로 가서 수사하면 됩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중수청장은 장이니까 정치적으로 당적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수사관 당적 3년…… 국수본부장도 3년 이상의 당적 이탈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이달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 11번 안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잠깐 멈춰 주시고,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전문위원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거는 큰 틀에서 아까 중수청장에 대한 결격사유, 당적 이탈 유무인데요. 이거를 수사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것을 준용해서 가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당연히 부과되는 거고요. 당직 경력을 이유로 해서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이라든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차관님……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국수본부장은 왜, 그거는 공무원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에 관련된 건데…… 중수청장은 좋아요, 장이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본부에 있는 일반 수사관들은 당적 이탈 여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 제가 여쭙볼게요.

지금 말씀처럼 국수본 수사관들이나 경찰청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는…… 기존 검찰 쪽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니, 자치경찰위원회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수본부장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의 문제의식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아니, 넣어 놔도 별문제가 없는 조항이잖아요.

○**이해식 위원** 그게 아니라 수사관이 직업공무원들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거기에 이런 조항이 불필요하잖아요.

○**이달희 위원**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지금 첫 출발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할게요.

이달희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있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수청 수사관만 이런 조항을 뒤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 이것은 패스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록에 남기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안건, 보고 끝났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2번 수사관의 점임에 대해서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임 조항은 사실상 앞에서 논의됐던 행안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을 보좌하려면, 저 같은 분이 수사·형사 사법체계 잘 모르는데 보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또 과거 검찰과 법무부 검찰국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12번 안건, 수사관 점임이라는 부분은 어제 예를 들었듯이 행안부장관의 보좌를 위해서 국장급에 대해서 점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가지고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번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저 한 가지만 이달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전문위원 나아정 아까 제가 이거는 정리돼서 넘어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4번하고 함께 같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보고드리면 퇴직 후 임용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이 퇴직 후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는 직위에 대한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청장, 차장, 수사관, 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퇴직 후 임용 제한 규정인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수사청 근무 경력을 이유로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 선택이라든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정부안 원안을 유지드리고요.

수사관의 경우에도 경찰청의 경우에도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번 안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14번, 6급 이하 수사관의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0번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내용입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설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까 사실 10번, 14번, 15번이 큰 틀에서 같은 맥락에서 운영돼야 되는 거라고 봤고요.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 징계권 이런 인사사무 관련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에 두는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행안부에 두는데 6급 이하는 지방중수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실제 운영은 위임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위임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딱 조항에 들어가나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거는 여기에 아까 위임사항을 정리해 주셨는데……

○고동진 위원 위임사항으로?

○소위원장 윤건영 예,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19조 신규채용 같은 경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네요.

○고동진 위원 행안부에다가만 설치한다고 돼 있네.

○이해식 위원 행안부에 설치하는데 실제 운영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6급 이하 위임해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고동진 위원님 지적사항은 별지로 나눠 주신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보시면 22조(징계)에 행안부의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괄호 안에 ‘6급 이하 수사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제 우리가 논의할 때 6급 이하의 경우 중수청장에게 위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을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게끔 정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직접 하기가 어렵고 위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 취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중수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면 임용이나 임용 제한, 채용, 징계위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16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적격심사 및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74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실시와 수사관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191면에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9인 또는 6인에 대해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9인으로 된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행안부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6명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고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 주셨던 부분이라 정부 측에서 6인 안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하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안건.

○전문위원 **나아정**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91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할지 중수청장으로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계속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적법성 담보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 산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지난번에도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행안부장관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중수청장 산하에 뒀서 운영을 하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좋은 출발을 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법무부에도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수청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용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DNA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들로 제가 보기에 거의 70%, 80% 절대다수가 재임용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인사위원회를 자기들끼리 하는 데서, 폐쇄적인 인력 구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행안부장관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반대로는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초기에는 중수청이 검찰의 후신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무직으로서 외부적인 통제를,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잠시만요. 이달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경찰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일정 부분 하는 경찰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상식 **위원** 다르지요.

○이달희 **위원** 이런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하려면 행안부장관을 따로 떼 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독립기관일 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 코드인사 같은 부분을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나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나 이런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치려면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요건을 좀 민주적으로, 안의 구성 요건을 바깥에서 입김이 정확하

게, 민주적인 제어장치를 인사권 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면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 끝나셨으면 마지막으로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의 안에서는 중수청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행안부에 두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리고 제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46쪽 수사심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원래는 30명인데 50명 이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안을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크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사심의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을 선출한다라는 걸로 법조문을 좀 더 명징하게 바꾸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아니라 새로 선출할 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과 행정실에다가 정확하게 법조문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고요.

소위원회 쟁점사항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한 다섯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번호로 따지면 3번, 4번, 5번 그리고 11번, 17번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안위 위원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수청 법안을 3일 동안 토론해서 쟁점을 17개로 추리고 그 추린 17개 중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남는 걸 5개로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 모두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도, 어떤 법안소위에서도 못 했을 일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앞서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3, 4, 5, 11, 17번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야 간의 이견 차이는 확인했고 그리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도 기록으로 다 남겨 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박수민 위원님께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한 번 더 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시기적으로 급박하니 오늘 처리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동 법안을 계속해서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특차도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오늘 오전에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결론 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충분히 지금 여야 간의 차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굳이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기록에 남긴 걸로 하고 정부안대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우리 위원님들 문제 제기에 따라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 없이 갔으면 하는데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토의를 했는데 여당 위원들 이야기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딸리다 보니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런데 여당 위원들도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

립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우리 법안심사소위 계속하실 거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이성권 위원 죄송한데 3일 만에 이 정도까지의 쟁점들을 정리해 내는 게 위원장님이나 여야 위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곧 점심시간이잖아요. 야당 간사님하고 한 번만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 오후에 방금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점심 들어가니까 오전에 굳이 이걸…… 오늘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식 위원 오후에 지금 어디 가야 될 사람도 많은데……

○이성권 위원 어디 가요?

○이상식 위원 경찰 합동임용식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성권 위원 아니, 그것은 개별 위원님 사정이고, 어쨌든 한 번만 더 야당 간사하고 점심 때를 활용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처리해도 되잖아요.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여당 민주당이나 혁신당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정춘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오후에 또 특자도법 심사, 계속 소위는 예정돼 있는 거니까요 하시고 시작하자마자 이것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혁신당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마음을 넓게 써서 이걸 표결 없이 가자라는 마음을 내주신 거니까요. 제가 정회 시간 동안에 서범수 간사님하고 통화를 할 텐데 2시에 이 법을 처리하는 걸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자도법 관련한 부처분들이 14시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수청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경찰청에서 오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전문위원과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정하면서 경찰에서 통보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와 또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통보해야 되는 수사가 수십만 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두자라는 건데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 수정안과 함께……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와서요, 어떤 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정회 중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 처리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지만 여러 사정으로 합의 처리가 어렵다라고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적위원 11인 중 출석 9인,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배석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바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회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정회는 아닙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정춘생 위원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

○소위원장 윤건영 예.

○정춘생 위원 차관님,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중수청법에. 그런데 정부조직법상에는 수사에 관련된 이런 규정이 없고 경찰청 관련해서 치안에 관한 사무만 규정이 돼 있어요,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부조직법으로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들어

지는 중수청법 자체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정춘생 위원 안 해도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다 오셨습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전북특자도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관계자분들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별도 배석자 명단을 보시고 특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받으신 부처의 관계자분들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입니다.

51쪽입니다.

마. 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안호영 의원안 제32조의4 신설 및 제52조) 사항입니다.

먼저 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관리 우수 수변구역에 대하여 기후환경부장관의 수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경우 도지사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강수계는 전북자치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충북·충남, 대전·세종 등을 거쳐 흐르는 광역 공동 상수원으로 특정 지자체에 수변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상·하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수변구역은 특정 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인 기후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부분인데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의제하려는 조항인데 이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산지 관광·레저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고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수질·환경 규제로 제도 간 정책 목적이 상이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만으로 수변구역 해제 효과를 부여할 경우에 금강 수질 보전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관련 부처인 기후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수변구역은 어떤 특정 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줄기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후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고요.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산악관광지구와 수변구역 정책은 제도 간 정책 목적이

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5쪽입니다.

바.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건인데요.

도지사가 전북의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자원순환산업 및 시설이 집적된 실증단지 조성과 시범사업·연구개발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북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수용을 하는 대신에 이게 도지사에게 권한을 의무화하는 거라기보다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추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56쪽 보시면 1항에 ‘추진하여야 한다’고요, 2항, 3항, 4항은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입법 체계상 ‘추진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기후부의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6번 전환산업 진흥 중에서 가.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북지역 이차전지·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관련 부처인 기후부에서도 수용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8쪽입니다.

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출고 이후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전북

자치도에서 친환경상용차 생산물량 확대 계획에 따라서 외부 협력사를 거치는 등 출고방식 변경을 계획하고 있어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현장의 상황이 있어서 발급 시점을 출고 이전으로 하는 특례를 이 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수용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다음 59쪽 네모 칸인데 임시운행허가 특례 조항을 이 법에서 신설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이 법에서 동시에 신설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배숙 의원님과 이원택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안 사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그 사항에 준해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액수도 자동차관리법에 맞춘 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정의견 안은 윤준병 의원안을 토대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나 약간의 자구 정리 부분이 좀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는 국토부에서도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운행허가 관련 과태료를 다시 신설하는 것도 이게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주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면제됐다가 다시 운행허가 관련해서 특례를 더 주다 보니까 이걸 또 위반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구 내용 등 일부 수정수용인데요. 큰 틀에서는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65쪽입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인데요.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에서 변경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경미한 행위인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고 관련 부처인 문체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66쪽 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공원 점용 허가 대상 및 기준을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례 사항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공익적 가치 보전, 주민들의 이용권 및 생활환경 보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인데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공원녹지 감소 및 점용제도 형해화가 우려된다는 관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국토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라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0쪽입니다.

마. 산악관광 관련 특례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민간제도 설치와 관련된 각 법률들 관련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을 좀 풀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민간제도 설치가 안 되는 지역에서도 민간제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고요.

또 제도운송법과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악벽지형 제도 및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제도 요건,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해서 요건을 완화하려는 사항이고, 그다음 도지사가 민간제도 설치를 위해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해제 특례 지역에서 빠져 있는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8항 사항은 국유림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유림을 준보전 국유림으로 재분류하고 국유림을 대부, 매각, 교환, 사용허가 또는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악관광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공공의 이익 및 생태계 보호라는 관련 법률의 취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여 결정하실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 등은 산지관리법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 사항 7항, 8항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지금 현재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어서 이 논의로 일원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기후부에서도 산악벽지형 제도의 요건이나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라는 공익 측면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호라든지 전국적인 통일성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타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검토라는 산림청·국토부·기후부의 의견을 참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9쪽입니다.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3편 제4장 사항들입니다.

먼저 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확대 건인데요.

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구·단지에 새만금고용특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 법에서 출입국관리법 특례 적용 대상으로 농생명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만금고용특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미 새만금고용특구는 새만금특별법상에서, 밑에 박스 관련 법령에 보시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법에 특별히 추가로 개정할 실익은 없고요.

관련 부처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증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필요성 인정 및 특례 적용 가능한 외국인의 수요 예측, 특례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구체적인 지정계획 마련 또는 시행령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서 특례가 신설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서 뒤의 80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 해당 1호부터 4호에서 다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대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새만금고용특구 대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와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발굴 부여한 법무부 의견을 고려해서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81쪽입니다.

나.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도내 글로벌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지역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상 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지위로서 그 심사기준은 법령과 하위 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일관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사실상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또 무기한으로 자격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었을 때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예요. 법무부 의견을 감안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법무부 나와 있나요?

아니, 지금 차관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원천적으로 되니 안 되니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글로컬 대학은 2년 전, 올해 지금 3년 차를 맞이해서 전국에 상당수의 대학들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는, 로컬에 기반한 글로벌한 대학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도 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적어 놓은 것처럼 특정 지역에 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법무부는 어떻게 보는지, 정부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당연히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법무부는 영주권을 주고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글로컬 대학에 있는 것의 몇 프로를 주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

○이성권 위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지금 신설은 ‘전북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냥 다 해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전북에서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이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통일적인,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해 주고 있는데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오늘 보니까 법무부에서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안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개 부처가 나와 있는데 법무부는 못 온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특히 R&D 관련된 인력들이니까 그러면 글로컬 대학이든 뭐가 됐든 석사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우수인력이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신중검토 의견 내는 건 좋은데 법무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건 혹시 이야기를 나눠 본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렇게 쿼터 같은 식으로 해서……

○**고동진 위원** 이것 R&D 인력은 쿼터제로 저기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들은 자꾸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자 같은 걸 줘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붙잡아야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국가의 통일된 외국인 우수인력의 비자 요건을 가져가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북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법이 법무부에서 쫓아가 주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법무부에 연락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신중검토 의견 이견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요청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3쪽, 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사항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농식품부 소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청년농업인 나이는 40세 미만으로 해서 18~39세로 돼 있고요.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나이가 40~44세인데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낸 안입니다.

귀농·귀촌 청년 및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통합특별시법하고 국가 청년농어업인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로 달리 정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지금 개정안에서는 농식품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지원하는 걸로 수정하는 게 좋겠고 관련 부처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농식품부와 기획처에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한 청년농업인은 18~39세인데 도에서는 조례로 40~44세까지 추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정부에서 그건 반대 의견은 없고, 다만 대상 지원이 늘어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수정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현실의 농어촌 나이를 보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건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만, 18~39세로 청년농업인 나이를 한 건 시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일괄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6쪽, 라.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네모의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등을 수집·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전북 자치도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특례를 아울러서 두려는 것인데요.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에 2026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과 보통교부세 산정·교부에는 통일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금 보통교부세 연계하는 2항 규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1항·2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거고요. 생활인구 시범사업은 행안부에서도 찬성하지만, 다만 전북도의 생활인구만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넣는 부분은…… 아시겠습니까마는 보통교부세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냥 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한 달에 3시간 이상 그 지역에 체류하면 생활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인구보다 20배, 30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에만 이렇게 될 경우 한정된 교부세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정수요를 반영해 주고 있고요.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전북의 11개 시군은 해당돼서 일부 보통교부세 산정 시 혜택을 좀 보고는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활인구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위치를 합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는 수정의견을 드려서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90쪽, 마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사항입니다.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평생교육 육성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의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생태계와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조항이고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2쪽, 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 사항입니다.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입주 기업 등과 투자진흥지구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부담금 등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법안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는데 오늘 일관되게,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부담금 관련 경우에도 그 근거 법률에서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는 사항이어서 이에 근거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신중검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세특례, 국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통상 연말 정도에 우리 행안위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법에다가 이렇게 두는 건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4쪽, 사.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건입니다.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인데요.

현행 강원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에 동일 수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만 묶고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도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이 법을 같이 묶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토부 수정수용 의견이고요. 이게 통합특별시법과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에도 유사한 특례가 있음을 감안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97쪽, 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 사항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에 추가하여 도지사가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전북자치도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고, 다만 추가적인 지원의 주체를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도조례상 지원 범위 역시 전북자치도의 자체 행정·재정 지원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산업부에서도 도조례로 위임하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도지사의 추가 지원 사항에 한정해서 해 달라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도지사의 추가적인 지원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수용 입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00쪽, 자.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도지사가 지정한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하여 일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정부 관련 부처인 과기부에서도 이 조항 자체가 ‘불구하고’라고 돼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자체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불구하고’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고 그걸 바꿔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정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03쪽, 차.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건입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박스에서 보시는 바처럼 과학기술원 설립 현황이 지금 1971년도 KAIST 설립 이후 95년에 GIST, 2011년에 DGIST, 2009년에 UNIST가 되고 지금 여기에 추가해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과학기술원 추가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 부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계 개편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인데 관련

부처인 과기부와 기획처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과학기술원의 추가 설립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미칠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부하고 기획처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05쪽입니다.

카.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특례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그 관련 절차들을 규정하는 내용들인데요.

다만 두 안 간의 차이는 조배숙 의원님 안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 인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우수기업 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조항을 두는 데는 관련 부처나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인증으로 할 거냐 지정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용어의 취지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보면 지정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윤준병 의원안처럼 지정으로 하는 것이 전북도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정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07쪽, 공정한 삶의 질 제고(제4편) 사항들입니다.

먼저 가번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사항인데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조항인데요.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비전속 의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례로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0쪽입니다.

나. 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전북자치도 내 국립공원 인근 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국립공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국립공원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인데요.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기획처가 국립공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공원 외 지역까지 지원하는 것은 기존 법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기후부,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2쪽입니다.

다. 농지 이용 증진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생산자단체가 전북자치도 내 농지를 위·수탁 또는 임대차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생산자단체를 참여시키고 농지의 위·수탁·임대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내신 안인데 도지사가 정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9조, 10조, 61조 등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이게 생산자단체한테 위·수탁·임대차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대신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 내에서 시·도지사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된 농지법 사항을 반영해서 도지사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용하는 특례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조문대비표에도 그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행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법령 내에서도 시·도지사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의 특례는 실익이 좀 적다라는 농식품부 의견을 감안해 주셔서 수정안처럼 수정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15쪽, 라. 외국인 정착 활성화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인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노력을 하려는 법률 개정안으

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관련 부처인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가족부도 다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6쪽, 마. 지역특화 발전 특례 사항인데요.

안호영 의원안 제90조의3부터 제90조의6까지의 신설 사항 조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네모 조항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사항인데요.

도지사에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북자치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사항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서는 대중교통 벽지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도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수준으로 특례를 부여하면 괜찮지 싶고 국토부, 기획처도 동일한 의견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속 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두 번째 네모 사항인데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특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달라는 것인데요.

에너지 전환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련 부처인 산업부, 기후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쪽, 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 수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도사업 인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수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적 관리 필요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동일한 이유로 관련 부처인 기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모인데요.

119쪽에 산악관광산업 관련 조세 감면 사항입니다.

산업관광산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이것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관련해서는 모든 노선보다는 벽지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국토부, 기획처가 수정 동의한 내용이고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된 바와 유사한데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부, 기후부의 의견을 감안했을 때 신중검토 의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인가 관련한 특례에 있어서도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마지막, 산악관광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에 있어서도 조세 감면은 조세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지금 일괄된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2쪽입니다.

9번 자치권 강화(제5편) 사항들인데요.

먼저 가. 자치조직권 특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설계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통일된 조직·정원 기준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조직 비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행안부 사안이어서 차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조직 관련 사항을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크게 허용한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폭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특별자치도까지 부여하는 것은 신중검토입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3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4쪽입니다.

나.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특례 조항인데요.

도지사가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용 시 우대 등 적극적 채용·인사 정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법하고도 취지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타당한 입법 조치이고 행안부에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 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26쪽, 이거는 그냥 단순 조문 정비입니다.

현행 104조에서 이게 1·2항 사항인데 1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1항을 넣는 조항이고요.

다음, 라 사항으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특례입니다.

먼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인데요.

자율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학칙, 교육과정·수업 운영, 수업연한 등의 사항을 안호영 의원님 안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율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은 그 박스 제8조부터 제46조 사항이고요. 이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국가 교육 체계와의 정합성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또 관련 부처 교육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교육부 의견을 고려해서 수정 수용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8쪽,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초·중등학교의 교원·직원 정원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안인데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인데, 교원 등 국가공무원 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단위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적 정원 체계와의 정합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러한 의견에 근거해서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행안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교육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신중검토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원은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조례로 하는 것

은 맞지 않고요. 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도조례로 하계끔 규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31쪽, 마.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3%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달라는 건데 이게 제주법에 있어서, 지금 제주법하고 세종시법에 유사 특례가 있는데 이것 감안해서 전북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개정안인데요.

제주하고 세종은 체제 개편을 단층제로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온 제도라 전북자치도에 까지 이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관련 부처가 행안부니까 의견을 좀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시겠습니다만 기준인건비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기준인건비를 각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리고 가급적 그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는 시군을 없애는 단층제로 되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로 하지 않고 교부세를 정률로 3% 드리면서 그 안에서 활용을 합니다. 인건비를 아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기초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이나 강원도는 아직 그런 단계가, 단층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33쪽, 지방교부세 특례인데요. 이것도 아까 앞 사항하고 조금 유사한 라인의 사항입니다.

저희 지방교부세 할 때 전북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더한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 달라는 건데요. 이게 세종하고 제주도도, 세종이 100분의 25 추가가 있고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 감안해서 전북에도 해 달라는 것인데 아까 세종시와 제주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은 앞선 안건과 비슷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신중검토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부세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지방정부에 좀 더 혜택을 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36쪽,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사항입니다.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내 3개 지방의료원 중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곳이 2곳인데 이곳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이 좀 필요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다른 관련 부처에서는 일단 조금 수용하고,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입법취지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기부 강요 금지규정을 조금 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수용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정수용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부 범위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걸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기부금품 모집 이걸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기부금품법에서 다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여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마 이게 처음 되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 처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신중하게 했다가 지방의료원에 한해서만큼이라서 전향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방의료원이 이런 특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랄까 그런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일체 지방자치단체나……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정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도 고향사랑기부제 그것을 허용해 드렸습니다.

○이해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특별한 형태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기상조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의료원에 한해서는 열악하

고 지방의료 정주여건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이런 형평성 제기를 하셨던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구체화하자 이런 표현을 넣은 거고요.

○이해식 위원 아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굳이 발목을 잡겠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또 특례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해서 평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존속기한도 3년이구요. 그렇게 해서 수정수용안을 바탕으로 정부안.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1쪽입니다.

아. 자치재정 확보 사항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네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입니다.

국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기획처에서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자체 재정 확보만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의 우려가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기획예산처장관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국가재정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원래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재정법하에서만 예비타당성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 지방세 특례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자치도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도조례로 이양하려는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납부기한 연장 기준, 세무조사 관련 절차 등인데 이게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에 전국적인 조세 형평성과 세법 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지방소비세까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 뒤에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특례인데요. 지금 지방소비세 안분과 관련해서 전북자치도에 가중치를 500%까지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할 경우 다른 시도와의 재정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의 라인에서 행안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자치재정 부분은 부처 의견이 다 신중검토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통합법 다룰 때 다뤘던 부분이라서요.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8쪽입니다.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인데요.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 지금 현재는 교육·학예도 다 포함해서 도지사 소속의 단일 감사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학예 사무에 관해서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통합특별시법에서 이 사안이 반영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와 같은 수준의 감사사무 자치권을 부여할지 감안하셔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요.

지금 만약에 받아들이시면 한병도 의원님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이 약간 다른데 윤준병 의원님 안에서는 감사위원장하고 감사위원, 이하 필요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한병도 의원님 안의 조항대로 받아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교육부에서는 이게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용 의견이 제시돼 있는 반면에 행안부와 전북도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교육부는 수용 입장입니다만 행안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또 전북도에서도 반대 입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모두 교육청, 교육기관을 감사하는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지 않고 도 산하에 감사위원회가 직급을 좀 높여서 2급 상당의 감사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위원회를 좀 크게 만들어 갖고 모든 감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만 이렇게 교육청을 별도로 감사하는 걸 또 만들면 그게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통합특별시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합특별시법 만들 때는 교육부에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는 별도로 구성하게끔 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교육자치 문제만 나오면 교육부는 교육감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별도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게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보면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하도록, 그러니까 ‘통합해야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니까…… 위낙 교사단체의 반발이 세고 우리는 사실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계의 입김이 너무 세요. 교육부는 마치 정부 부처에서 완전히 독립된 부처인 것처럼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이런 것만 강조하지 일종의 자율성이라고 그럴까 혹은 공동체 내에 교육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무신경할 정도까지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그런 정신에 비추면.

학교는 공동체의 하나의 기관인데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구청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는 요구만 있지 공동체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내의 아이들 방과후수업 이런 것만 해도 거의 30년 전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완전히 섬처럼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공동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이 서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다면 최근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아이가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사고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어떻든 저는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두는 것은 안 된다, 원칙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을 수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부칙은 개정안별로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준비기간 감안해서 6개월로 마련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이견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난 얘기인데 아까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 관련해서 좀……

이게 새롭게 시도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방의료원의 수혜 대상자들의 성격상 이것을 기부금품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재정으로 대응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사업이라든지 수입이 다소 변동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영역을 기부금품법의 특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도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우선 그렇게 의견

을 드리고 표결을 할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겠습니다. 쟁점으로…… 쟁점이 아니라 표결 전에 이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는 기록을 남겨 주시고요.

전북특별자치도법 정리하기 전에 별지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해서 3개 법에 공통되는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강원·전북·제주 이렇게 해서 얹게……

○소위원장 윤건영 3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3개 지역에 공통된 거라서 전북법을 할 때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사안은 직회부해서 온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현재 25명 이상 30명 이하, 제주의 경우에는 하한은 없고 상한만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또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도 5명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25명 이내를 5명 확대해서 30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위원회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각각 5명씩 확대해 달라는 개정안입니다.

지금 지원위원회를 해 보다 보니까 지원위원회 부의 사항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또 얼마 전에 있던 정부조직 개편으로 당연직 정부 차관 수가 늘어서 실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받아 주시고 시행일도 이게 즉시 가능한 사항이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시면 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도 수용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늘리자라는 거여서요. 또 이것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 논의가 끝났습니다만 의결은 강원특별자치도법 논의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석자들 정리도 있고 하나까요. 35분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 검토의 개요 부분인데요. 이 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됐고 이번 개정안이 3차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밑의 ‘참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표를 보시면 총 61개의 개정 사항인데요. 총 19개 부처 관련 사항들입니다. 전부 다 중앙부처에 있는 권한들을 이양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부처 간의 협의·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어서 현재까지 그 작업이 진행됐고 그 내용이 이 심사자료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의회 자치권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관련 사항들인데요.

먼저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건인데요, 지금 현행은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가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20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면적이 넓고 낮은 인구밀도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 특례는 공직선거법상 통일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통합특별시 설치할 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선행 검토 사항들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안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8쪽의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건인데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돼 있는데 정수만큼으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통합특별시 할 때도 이 안이 있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그 정도로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쪽의 마지막 네모, 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및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례 자체를 5년간 운영하고 평가해서 재평가하도록 하려는 사항인데요.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가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강원도에도 해 달라는 얘기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제주특별법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 수와 사무직원 임용 절차만 조례에 위임하고 일부만 반영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로 운영되는 측면 때문에 반영된 측면하고 또 일반 특자도를 통합특별시처럼 동일하게 반영해 줄지 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행안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잘해 주셨고요.

원활하고 신속한 검토를 위해서 부처 의견 중에 수용되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수용이다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신중검토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7쪽,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등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듯이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제주 같은 경우는 단층제라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이것은 또 정개특위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8쪽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확대 노력한다 정도로 수정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기구나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도 일단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한 부분은 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도 제주특자도법의 비례대표 정수 확대하는 부분 포함해서 했고 김한규 의원도 최근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관님 의견처럼 같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쪽입니다.

나. 의회 운영예산의 독립 계상 사항인데요.

의회 운영예산을 도예산으로부터 독립 계상하려는 관련 조항들입니다. 예산 독립해서 강원자치도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 시에 도지사가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재정 자율성 강화 필요성, 다른 특자시·도와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통합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지금 이해식 의원님 안이, 지방의회법안을 향후 전방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다 담아서 이 내용까지 포함된 지방의회법안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정사항이 앞으로 좀 논의될 사항인데 그때 지방의회를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지방의회법 제정하게 될 때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7쪽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입니다.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도지사의 용도폐지·처분제한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제한 요청과 매각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만 강원 전역에 국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제주특별법에서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한정해서 수익계약의 통한 사용·수익·대부·매각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관련 부처인 재경부에서는 용도폐지·처분제한 요청 사항 말고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허용하는 형식으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사항을 뒤에 관련 법령을 보시면 거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일부 개정안의 취지가 재경부 수정수용안으로 가도 반영될 수 있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정의견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1쪽 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시설을 사후 활용·관리하기 위해서 공공·학교법인 등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 강원도에서 도의 행정·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지금 낸 건데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 관리·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여 대상으로 좀 제한해서 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행안부에서는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서 양여 대상을 학교법인이나 여기까지는 안 하고 관할 시군에만 양여 가능하도록 수정수용하는 것이고요.

또 해당 양여 대상 시설 자체가 전부 다 강원자치도 소유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국유재산법 문구는 삭제 수정의견입니다.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기 구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기 때문에 시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특례 필요성과 관련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24쪽입니다.

2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관련, 제3편제2장 사항들인데요.

먼저, 가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네모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인데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강원자치도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도조례로 위임하는 사항도 도지사의 추가적인 지원사항에 한정할 수 있도록 아귀가 맞게 워딩을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6쪽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및 지원 특례인데요. 이것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북법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때도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13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에서도 수정수용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8쪽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북 하실 때 하신 사항입니다.

강원도에도 과학기술원 설립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아까 인구 감소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기로,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그대로 결정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신중검토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3쪽입니다.

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법에 진흥지구라고 돼 있어서 맞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다음,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보존국유림을 매각·교환·사용허가 또는 준보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전북법에서 한 번 설명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농해수위에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중검토되었고 위원님께

서 부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받으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진흥지구를 고치는 것과 신중검토 의견 정부 측 의견 맞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앞서 논의했던 내용과 유사하니까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8쪽입니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인데 먼저 첫 번째 네모, 종합계획 수립 건입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 유학생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요.

이게 제3편제2항제3절에서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관련 조항들이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에도 이걸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 일관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 없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입법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39쪽 네모 사항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인데요.

도내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관광단지·관광특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체류기간 상한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법무부 쪽에서 수용하는데 왼쪽 개정안 주요 내용 박스를 보시면 2호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는데 이게 4호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 삭제해서 반영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은 수용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종합계획 수립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삭제해서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2호를 삭제한 수정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1쪽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복법 하실 때 보신 사항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첨단지식산업분야 석·박사학위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영주요건 완화 및 면제 특례 규정인데요.

이게 법무부에서 전국적·통일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었고 아까 심사 사항에서 정부 의견을 수용하시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43쪽 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례입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 차관님한테, 41쪽 아까 전복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유사한 내용입니다.

○**고동진 위원** 여기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이런 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공을 하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데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3쪽입니다.

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례인데요.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인데 출입국관리의 전국적·통일적 기준 유지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인데 동일한 이유로 관련 부처인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41페이지와 43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두 개 다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8쪽입니다.

교육환경 조성, 제3편제3장 사항들입니다.

먼저, 가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북 할 때 보셔 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사항입니다. 도내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지금은 23조 2항이 자율학교 특례 사항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23조 2항까지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개정 사항입니다.

제주도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요구를 한 것인데요. 전남에서는 이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유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국가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를 배제할 경우에 지역학교 학생은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고 광주·전남통합법 할 때도 이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49쪽의 네모,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인데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지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지방교육자치법이 2026년 5월 시행 예정이어서 법 개정 실익이 일단 없는 사항이어서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 부분 계속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소규모학교 협동교육 과정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 설치,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적용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인데요.

아마 도내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초·중등교육법상 적용배

제 사항이 필요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지금 30조의2, 30조의3 그러니까 학교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배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이게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항도 조금 특례 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8조하고 31조를 적용배제하는 것은 수용하고 회계 규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용배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2쪽에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부분과 관련한 특례인데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상 일반 기준과 달리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도 상황에 맞게 해 주려는 취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다만 공동급식센터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신고 규정만 추가해서 수용하겠다는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관련해서 자율학교운영의 특례인 경우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도 보니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고요.

50쪽의 소규모학교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법률상 회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동의해서 수정수용하는 입장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는 다 좋은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신고 등 규정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56쪽입니다.

나.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관련 규정 신설에서 2절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신설하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글로벌교육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개정안에 쫓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역 교육 경쟁력과 정주 유인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낸 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공교육 체계 및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학생 수요 및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관련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는 행·재정 지원 주체에서 국가를 제외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외국어 교육환경의 조성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과 관련해서는 62쪽 대비표를 보시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행안부 측의 수정수용 의견이고요.

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는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대상을 좀 명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48조의9부터 21까지(국제학교 설립)이 쪽 개정안에 요구돼 있는데요. 국제학교 부분은 제주도에 아마 국제학교가 있어서 강원도도 이것을 해 달라고 개정안에 반영해 온 사항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이게 제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좀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고, 강원도 측에서는 해 달라는 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과제로 남기겠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가 신중검토한 의견을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관련해서요. 기획처에서는 행·재정 지원 주체에 국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48조의6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48조의7은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매각·대부하는 건데요. 국토계획법상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해 드리고요.

48조의8도 이게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수정수용이고요.

48조의9부터 21까지(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만 내국인 학생들로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교육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오늘 배석하셨습니다.

교육부 앞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여기 제주도에 이렇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제주도는 2007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15년 정도 지난 거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원도에다가 이러한 동일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런 국제학교를 짓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항 자체를 제주국제학교 모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학교 모형은…… 저희가 보통 국제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아시는 체드워, 인천에 있는 것이 외국……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똑같은 모델이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주를 여기 조항에 담는 것은 신중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제주 모형은 그때 조기유학 수요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라는 섬적 특성을 인정해서 국내 학생들 100%로 외국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짓는 예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학교를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 내국인이고요. 그 학생들이 87%가 해외대학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그러니까 설립 주체가 국가랑 지자체라는 게 문제인데 국가·지자체가 그런 모형을 강원도에 또 짓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다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 그 대목에서, 제주도 국제학교는 내국인 국부 유출을 막고 대부분 해외유학을 가고 그러면 성공적인 모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그때 입법취지를 바라보면 조기유학 수요를 막고 국부 유출을 막겠다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봅니다, 실패로 봅니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그때 입법취지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서 이것이 성공적이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뭐가 이렇게 맞지가…… 반대하는 정확한 논리가 뭐예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국제학교가 정말 다른 방법보다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해서 공공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수업료가 비싼 학교를 짓는다, 그 모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공공재정이, 일반 학교에 가야 되는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동진 위원** 내가 말을 좀 끊어서 미안한데, 서울만 해도 지금 유치원, 영어유치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사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하는데, 내가 통계 데이터는 정확히 안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 같은 데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제주도하고 똑같은 성공모델을 만든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안 돼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개만 들어 봐 주세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그렇게 설립을 해서 공공재정을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귀족학교를 국내 학생 100% 가는 모형은 제주도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꼭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수정을 해서 수용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못 받고요?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아닙니다. 저희가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의 그 안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모형이 아니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강원도가 원하는 외국학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투입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모형이나 아니면 강원도가 부지도 제공하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그런 학교가 직접 들어와서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 모델은 이미 가능하고요. 저희가 내국인 100% 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원하는 만큼 내국인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다 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원도랑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을 하고 싶으시다 이게 차이점인데 그 모형은 저희가 강원도를 수용을 하는 순간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국제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형을 가져가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거고 강원도에 채드워 같은 외국교육기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으로 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랑 계속 말씀을 드려서 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결국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그것은 안 되고 외국학교가 들어오든 뭐 하든 국제학교를 강원도 내에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좀 여쭙 게 있는데……

제주도 국제학교 모델이 성공한 모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가지고 제주도 국제학교 모델이 성공했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위원장님, 성공했다는 것은 입법 취지 자체가 그때는 국부 유출을 막고 조기유학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취지를 갖고 있었던 그 취지에 비추어서 그런 유학 수요를 흡수했다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육의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는 물론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평가는 다면적으로 해야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면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요청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 협의와 강원도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강원도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 부분이 걸려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고동진 위원** 담당 서기관이 성공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왜 위원장이 그것을 또 아니라고 그렇게……

○**소위원장 윤건영** 반성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제가 성공모델이라고 한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닙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얘기 잘했어요. 소신껏 해야지, 소신껏.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글로벌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견 있으신 분……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동진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73쪽입니다.

5번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제4편 제1장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가. 농업 진흥 관련 특례입니다.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인데요.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토지이용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내신 건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고 현행 국토계획법상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필요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관련 부처인 국토부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필요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더해서 농업진흥지역은 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체계 정립 이전인 1992년 12월부터 지정되어서 지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항이어서 농업진흥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76쪽 네모 사항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하며 3년 미만 보유한 개인 농지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사항인데요.

강원도 지역의 인구 유입과 효율적 농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습니다

만 투기 악용 우려, 비농업인 유입에 따른 농업 기반 약화 가능성,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원칙과 충돌하고 또 농지 활용 투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농업 진흥 관련 특례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농식품부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라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0쪽입니다.

축산업 관련 특례인데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가축방역관의 자격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가축방역관 자격 등 임명·위촉 관련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건데요. 현재 가축방역관 중에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려면 동물병원 운영·근무 중인 의사거나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고 물론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근무 중인 의사는 업무를 극도로 제한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풀려고 하는 개정안인데요.

이게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조항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또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82쪽의 두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강원축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례인데요.

도지사에게 강원축한우의 혈통 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한 연구 및 행정조치 권한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축한우의 거래 권장, 실태조사 및 유전자원 수집·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데 필요한 조항이고, 다만 농식품부에서 한우국가개량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진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 한우 개량과 관련된 사항은 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강원축한우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특례는 사전 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정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85쪽입니다.

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특례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강원자치도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 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면적 기준을 30만㎡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강원도 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내신 안인데 종합계획과 관련된 얘기라 저희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점 감안해서 지금 해수부·기획처에서 강원자치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의무 반영하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의견을 내서 그 의견대로 수정수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86쪽에 선박등록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외국 선박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사항은 계속 저희가 심사하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거기서 바뀌지 않으면 실익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근거법에서 조세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관계부처인 해수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인데요.

시험양식업 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건데 이것은 시험양식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85쪽,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정의견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다음 쪽에 선박등록특구는 해수부 의견이라든지 재경부·행안부 모두 신중검토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88쪽의 시험양식업은 수용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91쪽입니다.

라. 해역이용협의 관련 특례인데요.

총 6항까지 6개의 세부 사항들인데요.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조항인데 강원지역 수요가 많은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인데요.

넓은 공유수면을 보유한 지역적 특수성, 전국적·통일적인 협의 기준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관련 부처인 해수부에서도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협의 기준이 적용되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협의 면제와 간소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이런 개정안 요구가 기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서 강원자치도만의 특성에 맞는 걸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라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해수부에서도 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물동량하고 통항 규모 등 전국 단위 종합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에 어구 규모 등의 제한인데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에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 법에 있는 해수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인데요.

근해어업은 인접 지자체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규제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적절한 면이 있는 사항이라서 관련 부처인 해수부에서도 그런 기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또 아울러서 이미 수산업법 제87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법령상 의무를 충족할 경우에는 어구의 규모 등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없어도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현행 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점도 아울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항 지방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건인데요.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인접 해역 및 타 지방어항과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관련 부처인 해수부에서도 지방어항 지정·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항의 과다 개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간 중복 투자 등 방지를 위해서 해수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쪽, 5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지금 해수부장관의 권한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인데 이걸 시·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관련 부처인 해수부에서는 이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민 안전조치 수립 권한 이양인데요.

도지사에게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 수립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해당 지역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또 관련 부처인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5항과 6항만 수용이고 나머지는 신중검토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8쪽, 6번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 특례(제4편 제2장) 사항들인데요.

먼저 가.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사항입니다.

이게 두 쪽지인데요, 댐 수입금의 공개에 관한 특례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이게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신설하려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총 저수용량 10억t 이상의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해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다목적댐의 사용권자에게 댐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서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댐 사용권자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수자원관리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기후부와 기획처에서 이미 댐 용수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100분의 20을 내서 기금을 추가로 설치할 여력이 없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고 그 의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연관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또 이 정보 요구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이어서 아울러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2개 다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05쪽,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특례인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협의도 도지사가 일괄 주관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의 전국적·통일적 관리도 동시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점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기후부도 수질오염총량제는 상·하류 전체 수계에 공통 적

용되고 지역개발사업 협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다음 108쪽,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인데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시행 명령 및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수정 방식이 법률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체계를 좀 바꿔서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보면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 수립·시행을 명령하는 권한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시행명령을 받아서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조항들인데, 이게 시도하고 시군구가 같이 묶여 있는데 현행은 전부 다 기후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걸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데 시도 부분까지 위임해 주기는 어렵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주겠다, 그 정도는 이양이 괜찮겠다 하고 기후부에서 그 안으로 수정수용을 하겠다는 안으로 수정의견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후부 의견을 고려해서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0쪽,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현행 지정문화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돼 있는데 이걸 300m 안으로 강원에는 특례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전국적·통일적 기준 유지 필요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는 사안이고 관련 부처인 국가유산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조례로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인 500 자체를 300으로 하는 것까지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은 신중검토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2쪽, 7번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제4편 제3장 사항들이고요.

먼저 가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등인데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 등에게, 지금 현재는 관할부대장만 돼 있어서 관리부대장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나와 있고 그 두 주체에게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건의를 하고 또 협의업무의 위탁 건의를 하고 건의가 미반영될 시에는 이유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접경지역이 많고 군사시설 관련 규제가 많아서 이런 특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다만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이 점을 아울러 고려해야 되고 국방부에서 그런 이유로 협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범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으로 국한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의견에 반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17쪽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국방·군사시설 이전 지원 특례 등에 관한 건데요.

먼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건데 미활용 군용지 매입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 군용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특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잔금 미납 시 소유권 귀속, 원상회복 부담 등의 분쟁 가능성도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 그래서 관련 부처인 국방부에서는 미활용 군용지를 보유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부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10분의 1 이상만 납부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면 매각(납부)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118쪽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지원인데 강원자치도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강원도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이것도 국가의 재정 여건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고,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기획처에서는 부대 이전은 지역 개발 및 주민 민원 해소 등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교정·경찰시설 등 타 국가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 원칙을 벗어나는 특례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의 네모 사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소음영향도 등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공항소음대책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정 기준 등이 상이할 경우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은 전체가 신중검토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그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고동진 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칠팔십 년 동안, 국방·군사시설 관련된 접경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어디보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국방·군사시설 이전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물론 국방부,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행안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 판단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고향이 또 강원도기 때문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처 간 협의하는데 국방부나 기획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기부대양여도 사실 철원이라든지 화천 이런 데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면 민간이 거기 와서 투자해서 다시 기부대양여로 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 대구광역시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요. 강원도는 사실 이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동진 위원 왜냐하면 강원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특수성이 있는 지역인데 신중검토 의견을 보면, 수익자부담원칙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10% 내면 거기다 뭐 짓게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아까 안 되는 걸로 했고.

그런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조차도 막는 건 오히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있는 여러 가지 특례는 협의해 나가는 게 수용과 일부 수용 먼저 해 주고 신중검토도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지금은 신중검토 의견, 나는 지금 그거 안 된다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가서 이 부분은 좀 토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유념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저도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하고 비

슷한 생각인데요.

강원도는 국방·군사시설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상대적 피해를 봤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조차도 신중검토 의견이 올라온 건 좀 의외인 것 같고요.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좀 더 조율하고 해서 이 부분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비슷한 질문의 연장인데요.

정부 의견은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해서 국토부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지요? 그런데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들이 실제 많이 들어가나요? 혹시 이것을 예산 추계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안 되니까 다 신중검토를 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방부에서 답변드리도록……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국토부 공항운영과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국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공항 운영자인 공사가 예산을 대 가지고 연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600억 좀 안 되게 지금 국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영향도 조사를 하고 대책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례로 해서 도지사가 특별한 경우로 대책지역을 지정하게 되고 다른 영향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강원도는 없네요.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저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건 민군공항을 제외한 순수 민간공항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군공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양양공항도 조사를 해 봤을 때 저희 국토부 법령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는 좀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특례 조항으로 좀 주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민간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하지만 그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걸 설명해 주세요. 민간공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공항공사에서 민간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민군공항은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인데……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니까요. 트랙이 다른 트랙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설명하세요, 계속.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저희가 공항 소음은 소음 영향도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원칙과 소음 영향 지점을 해 가지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양양공항 소음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되셨습니까?

○**정춘생 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약간 납득은 안 되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이거 같습니다. 양양·원주공항은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 주지는 않고 양양공항은 민간공항인데 비행기 뜨고 내리는 실적이 다른 공항보다 좀 적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사무관 박희종**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 자체가 일괄적으로 국내 공항 전체에 대해서 좀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춘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21쪽입니다.

다. 민·관·군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강원자치도에 민·관·군협력위원회를 두고 강원특별법상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사항, 군과 관련된 민원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의와 소통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고요.

이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을 특정 군 지휘관하고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서 대표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군이 국방부 내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국방부 고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고.

또 이게 군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협의 사항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군이 협력하여야 될 사항, 군 쪽에서도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국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조례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국방부에서 수정수용하겠다는 사항이어서 받아들이시는 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아 있는 분량,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아니요. 거의 5분의 4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쪽 다 한 번 리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여기서 한 분이 라도 빠지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결을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아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정춘생 위원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동기부여.

팬썰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일어나면 오늘 결정 못 하겠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소위원장 윤건영 쪽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혹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차관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26쪽입니다.

8번.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부분인데요.

먼저 가번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게 별도 근거 없이도 추진할 수 있지만 좀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항이고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인데요. 제73조의4에서 이 부분은 빼고 그냥 도지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받겠다라는 기획예산처 의견이고요.

다음, 129쪽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항은 도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사업 시행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여기 조문에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을 각 호 사항으로 포함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제도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이 운영 부분만 빼는 것으로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은 수용과 수정수용이 있는데 맞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광희 위원 국제회의도시에는 좀 해 줘도 되지 않아요? 지원을 좀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수정수용인데 이게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육성하는 건데……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기획예산처에서 나와 계시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광희 위원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기획예산처 행정외교예산과장입니다.

일단 국가를 빼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건 제주특별법하고 전북특별법에서도 동일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광주전남에는 있잖아요.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광주전남은 아시다시피 지금 3특하고 통합,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광희 위원 아니, 5국 3특이라면서요. 그러면 5국만 도와줘? 3특도 도와줘야지.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이광희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이것 좀 어떻게……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똑같은 조문이 지금 다른 데에 있는데 이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다른 조문도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광희 위원 다른 거는 다 동의했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지방에서 살기 힘듭니다.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그런데 아시다시피 3특법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걸 넣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광희 위원 아니, 광주전남 들어갔고 대전충남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기준을 맞춰야지 왜 안 된 데다가 기준을 맞추면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맞춰야지.

○기획예산처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위원님, 3특이 같이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춘생 위원 이거 하고 다른 특자도도 하면 되지.

○소위원장 윤건영 들어가시고요.

이건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33쪽입니다.

9번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4편 제5장 신설 사항들인데요.

가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 중심병원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완료되어서 법도 지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있고 또 연구 중심병원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인증제로 운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들이 조금 현행 제도들하고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항, 3항 그 관련 사항은 좀 빼고요. 1항에서 도지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정수용 의견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36쪽, 의료 관련 특례입니다.

비대면진료에 관한 특례인데요.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인데 지금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지금 이 개정안 취지가 이미 개별법을 통해서 개정법을 통해서 다 반영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는 개별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한 기준들을 통일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의료인 진료허용에 대한 특례는 이거 아까 전북법 하실 때 하신 사항입니다. 수용하고요.

다음, 138쪽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인데 이게 현행법에 따라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에 표에 보시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보유,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24시간이 아니더라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해 달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약사법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이 정도로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좀 어렵고, 하더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에서는 아까 전북법 논의했던 수용 부분 말고는 신중검토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에 한번 확인차……

그러면 의료법 개정으로 초진 제외하고는 비대면 진료가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박수민 위원 확실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박수민 위원 강원도도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개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의 제기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정부 의견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42쪽입니다.

10번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경쟁력 강화 사항 등인데요. 먼저 가번 건설 관련 특례입니다.

첫 번째 네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100분의 120 범위 이내로 하는 특례를 해

달라는 개정안인데 이것도 강원지역 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토지활용도 제고 필요성과 아울러서 유사 입법례, 지금 제주나 다른 법률에 특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유사 입법례만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수정수용입니다.

다만 수정하는 부분이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단서를 포함해서 수정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144쪽에 지역건설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자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인데요.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국가계약법에서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의 투명성이라는 기본 취지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재정부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에 통일된 국가계약 체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타 시도의 특례 요청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건설 관련 특례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진흥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계약 체계의 혼란이라든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8쪽입니다.

나.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사항인데요. 도지사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강원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비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과 전국적·통일적 기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인데 국토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시에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단위부담금을 도조례로 이양토록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만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스에 관련 법령 보시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7조에 부담금 산정기준 보시면 바닥면적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거든요. 여기에서 교통유발계수만 도

조례로 이양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수정수용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52쪽,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례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발전지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54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지사에게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책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강원지역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수용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진행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56쪽입니다.

석탄경석 자원화 및 핵심광물 산업화 특례인데요. 폐광지역 석탄경석의 활용에 관한 특례 및 민관협력 촉진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원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개발, 공동정책 추진을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역적 필요성과 산업 잠재력을 반영한 입법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경석에 대해서만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미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에 의한 석탄경석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후부에서 수정수용 의견이 내 있고요.

다음, 국유림의 산지 내 경석의 매각에 대한 특례는 국유림 산지 내 경석에 관한 산림청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해복구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석의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대상 국유림을, 지금 산림청장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부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좀 한정해서 해 달라는 것과 무상양여 가능 대상 기관에 지방공기업이 빠져 있는데 지방공기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경석 관련 조항을 해서 추가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위해서 산지관리법상 매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그리고 이 평가 자체를, 이 제도 자체를 3년간 조금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평가하고 다시 하겠다라는 특례의 존속기한을 추가적으로 넣으

려고 하는 수정의견을 포함하는 안으로 수정수용입니다.

다음 158쪽,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인데요. 도지사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광물 생산기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관련 부처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은 석탄경석 관련해서 수정수용과 산림청 관련 수정수용 의견 그리고 수용 의견이 맞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6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특례인데요.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강원자치도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익계약 방식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관리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관련 부처인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돼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만 좀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수정수용 의견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마지막 별칙 조항.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별칙은 국제학교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건영 아까 논의한 거기 때문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견 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포함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 부칙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부칙인데요. 이것 시행일을 1년 해 왔는데 전북법도 6개월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6개월로 수정하는 게 좋겠고요. 적용례는 도의 예산에 관한 걸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부처 의견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혹시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하여튼 세 번째 이번 법안심사소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수정법 그리고 전북특자도법, 강원특자도법 어려운 법안들인데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고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룬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요,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일정을 추가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소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 및 관련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 선포하기 전에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아까 합의는 다 이야기됐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군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예산처에 행안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역차별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자꾸 그러는데 오히려 나는 강원도가—나는 강원도하고 별로 상관없어요—그런데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합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시니까요.

○**고동진 위원** 다음 회의 우리 결정하기 전에 그건 좀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광희 위원**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윤건영** 전체회의에서 검토의견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고동진 위원** 우리 다음 회의할 때.

○**소위원장 윤건영** 예, 추가로 보고해 달라는 정도로 하시고.

○**고동진 위원** 예, 추가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회의라고 하시면 너무 촉박하고 협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차관께서는 이 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들을 추가로 보고해 주시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고동진 박수민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재관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지성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총괄기획과장 이상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 김동준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국방부
부대건설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이용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정천우
공항운영과사무관 곽희중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김도한
기획예산처
행정외교예산과장 박진호
지역예산과장 정석철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장 박정섭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석문
제주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